

행 정 자 치 부

기 관 경 고

제 목 ○○○○○○○○ 위원장 특별승진심사위원회 등 참여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·복지,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광역시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 되,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 한 사항,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채용·승진 및 전 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별승진업무 추진 시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의 승진 등 임용 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대상임에도 ○○○○○○○○○ 위원장을 특별 승진심사위원으로 위촉·참여(발언, 점수부여 등)하도록 하였다.

또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

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해 오면서, 감사일 현재
까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평정 순위와 평정점 심사·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
정위원회 개최 시 ○○○○○○○○○ 위원장을 위원으로 위법하게 위촉·참여
케 하여 인사 관련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순위를 상향 또는
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기관경고] ○○○○○○○과의 비교섭 대상 업무인 공무원의 채용·승진 및
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하는 일이
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